

# 데이터산업법제 규제개선 동향

정현수



# 데이터산업법제 규제개선 동향

정 현 수

법무법인 현민 변호사

## 요약문

### S U M M A R Y

-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가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데이터 유통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 데이터 경제의 창출 등 막대한 연쇄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음
- 특히 5G 환경에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생산에서 저장, 유통, 분석평가에 이르는 원만한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확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이를 위한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음(제14조제1항)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제20조제1항), 이와 같은 공정한 가치평가, 객관적 품질인증을 바탕으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음
- 나아가 가치평가, 품질인증과 같은 제도적 기반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데, 동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제21조)
- 그러나 법령상 가치평가의 기법 및 방법, 품질인증의 절차, 기준 및 관리, 표준계약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은 아직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빅데이터 거래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나, 아직 데이터 유통 생태계 형성이 부진한 상황임
  - 미국은 개인정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해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성장 중이며, 중국은 귀양빅데이터거래소 등을 통해 공공·민간 데이터의 거래뿐만 아니라 데이터 가공, 가치평가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데이터 거래 시장 활성화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계약 실무의 사례 부족에 따른 거래 비용 증가 방지 및 데이터 계약 활성화 등을 지원을 하고 있음
  - 우리 역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거래소의 구축 등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이와 같이 AI·데이터 이용을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데이터산업법」 제정에 적합한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계 법령상 체계도 명확하지 않음
- 일본의 예와 같이 데이터 이용 및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의 체계적·발전적 개정을 통해 데이터거래 활성화와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수단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문제를 연결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규정(예컨대 동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과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거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산업법제 규제개선 동향

# 목차

## C O N T E N T S

# 데이터산업법제 규제개선 동향

<b>I. 서론</b>	<b>07</b>
<b>II. 국내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현황 및 국내 시장 현황</b>	<b>09</b>
1. 정책 추진현황	09
2. 관련시장 현황	13
<b>III. 주요국가의 데이터 활용 정책</b>	<b>17</b>
1. 영국	17
2. 일본	18
3. 미국	20
<b>IV. 데이터산업법의 주요내용 및 한계점</b>	<b>23</b>
1. 데이터산업법의 주요내용	23
2. 데이터가치평가, 품질인증 등	25
3. 한계점 및 시사점	28
<b>V. 데이터 활용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b>	<b>29</b>
1.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29
2. 민간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과 방향	30
<b>참고문헌</b>	<b>33</b>





---

# I. 서론

---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 “모든 데이터가 활용하기 쉽게 자유롭게 흘러, 타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시대, 4차산업혁명 기술들의 기반이 되는 원유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는 지능정보화사회의 핵심요소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자원임
- 과거에는 흘려버렸던 수많은 디지털 행동패턴(Digital Footprint)<sup>1</sup>을 활용함으로써 광고, 금융, 물류, 교통, 생산시스템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기능도 제고가 가능함
-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혁명이며, 데이터가 사물인터넷, AI기술과 알고리즘을 통하여 고품질, 대량 데이터로 생산되며 원활한 유통과 분석평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면서 4차산업혁명을 지속적으로 촉발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가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데이터 유통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 데이터 경제의 창출 등 막대한 연쇄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음

---

1 디지털 행동패턴(Digital Footprint)은 온라인에서 개인이 SNS활동 등을 통해 남겨놓는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의미한다(예 : 모바일 기기 이용패턴, 전자상거래 이용패턴, SNS 활동기록 등).

- 특히 5G 환경에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생산에서 저장, 유통, 분석평가에 이르는 원만한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 주요 국가의 데이터 활용정책과 주요 거래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산업법」이라 함)의 주요내용을 고찰함으로써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 II.

# 국내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현황 및 국내 시장 현황

### 1. 정책 추진현황

| 표 1 | 정부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산업육성	규제 혁신
빅데이터센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1조원 투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자기정보 활용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 추진 데이터 전문인력 5만명 양성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육성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 제외 가명정보 고의적 재식별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 데이터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
- 최근 데이터 활용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 중심의 플랫폼 운영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  
부문에서 추진할 필수적인 역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데이터가 산업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신자본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8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발표('18)에 이어, 올해 다양한 데이터 산업 지원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가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 최근 관련 산업 촉진과 더불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음
  - 데이터의 양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 거래 기반 조성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나,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표 2 |** 데이터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거래 종합포털(플랫폼) 및 거래지원 기능(법률·품질·가격산정 등),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부의 중간 역할은 반드시 필요</li> <li>• 데이터 상품·BM 발굴, 수요-공급 연결 코디네이터 등 시고용창출 가능</li> </ul>
<b>정부 설립·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데이터 거래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시장에 악영향 우려</li> <li>• 중 빅데이터거래소는 정부가 민간의 데이터 흐름 파악 목적도 있음</li> </ul>
<b>시의성 · 추진범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데이터(30%)보다 비개인데이터(70%)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규제 개선 시 데이터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예정으로 거래지원 기능 시급</li> <li>• 빅데이터플랫폼,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해 보며 점차 공적역할 모색 필요</li> <li>• 특정 분야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초기에는 작게 시작하고 점차 물리적 기반까지 발전하는 것도 좋은 방안</li> </ul>
<b>유의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거래소 설립에 대한 논의 있었으나, 소비자 단체 반대 등으로 무산</li> <li>• 한국기술거래소, 지식재산권거래소 등이 민간참여 저조, 시장성 미고려로 실패</li> </ul>

- 데이터 거래 기반 조성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표 3 】 데이터 거래 기반 조성 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핵심기능	거래 원칙, 가이드라인	•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주요 원칙과 가이드라인, 리스크 체크리스트, 보안 대책, 데이터 윤리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지원
	종합 거래 지원 포털	• 국내외 플랫폼을 연계하여, 쉽고 빠르게 필요한 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 검색·거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 지원
	표준·품질 관리	• 데이터 거래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원시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품질 검증 및 데이터 정제 지원
	기업관리·각종 공시	• 공정한 거래와 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판매·유통 등을 영위하는 기업 등록 및 기업 정보 관리 • 데이터 공급기업의 거래소 진입요건(심사-관리-퇴출 등)을 마련, 블랙마켓 조장 기업 또는 체납 기업 등의 진입 제한
	법률 및 가격산정	• 소유권, 지재권 등 데이터 권리 프레임워크 안내, 개인정보 및 기타 법적 분쟁 문제에 따른 상담, 컨설팅 지원 •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가격산정(가치평가) 및 자산화를 측정하기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상담, 컨설팅 지원
	분쟁조정	• 데이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자율조정위원회 운영
기타기능	상품개발 비즈니스 지원	• 이종 데이터 융합·가공 및 다양한 데이터 상품 개발·출시 • 산업별 특성에 맞는 데이터 활용 가이드 마련 및 안내서비스
	인프라·개발환경	• 민감 데이터 특별 관리, 샘플데이터 보관·테스트 지원 등 • 클라우드 기반 개발도구·SW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보안·신기술 접목	• 데이터 암호화·비식별 처리, 각종 보안 조치 지원 • 데이터 거래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
	실증지원	• 개발 제품·서비스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화 및 확산 지원	• 거래소의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된 서비스는 시범서비스 등을 통해 공공·민간 다양한 분야에 우선 적용 추진 및 확산 지원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 현재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며, 선진국은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그간 데이터 정책은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거래, 산업적 활용 등이 더디게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 주로 다음의 문제가 지적됨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인 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영역별 실제 데이터와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미흡함
  - 공공데이터가 일부 개방되었으나, 중소·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데이터 갱신·품질 수준이 떨어져 활용도가 저조함
  -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낮아 빅데이터의 저장·관리가 비효율적임
  - 빅데이터 R&D와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기업이 전무하고 전문인력도 많지 않은 수준임

□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된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1-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기정보를 스스로 통제·활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개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전방위 지원(법제화·안심존 구축·신기술 적용·EU GDPR 대응) 추진
- **(전략2 -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 데이터 구축·개방(4차 산업혁명 핵심데이터 등, '22) → 저장·유통(데이터 거래의 비즈니스화, '18) → 분석·활용(산업·사회 혁신 활용, '18) 등 전과정에 걸쳐 실제 데이터 기반 영역별(의료·교통 등)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
- **(전략3 -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 빅데이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성장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기술 융합, 분석 전문인력 양성, 컴퓨팅파워기반 기업성장 인프라 지원 등을 아우르는 역동적 산업 생태계 조성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 기업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데이터 유통에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함
  -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빅데이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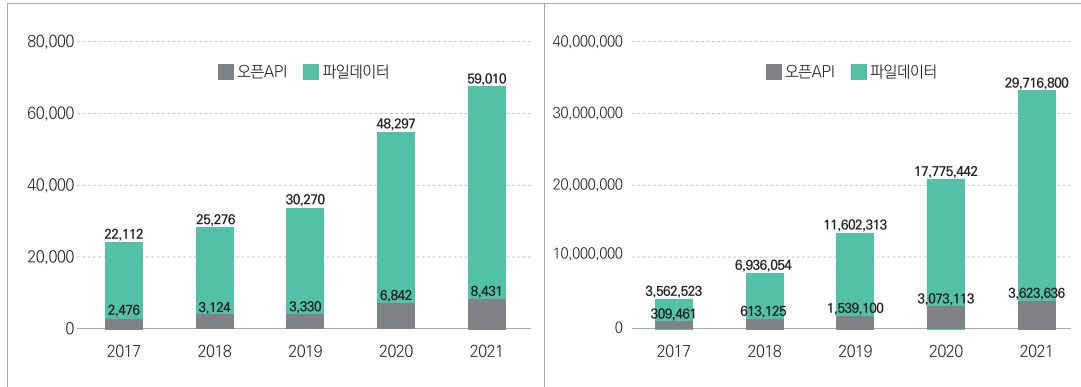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하는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해외 입법례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빅데이터의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등의 개념을 도입한 바 있음
  -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는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 신용평가체제도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이밖에도 정보제공 동의를 내실화하고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다양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의 혁신 성장과 소비자중심 금융을 구현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
  -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각종 정보를 활용해 표본 DB와 맞춤형 DB를 제공하게 되며, 표본 DB 활용을 통해 중소형 금융회사나 창업, 핀테크 기업 등이 상품개발이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 관련시장 현황

-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맞추어 포털에 공개 및 활용되는 데이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데이터의 형태도 파일 데이터 위주의 제공에서 실시간 쿼리나 대용량 다운로드가 가능한 API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약 387만 건(파일데이터 356만 건, API 31만 건)에서 2021년 약 3,334만 건(파일데이터 2972만 건, API 362만 건)으로 4년 간 약 8.6배 증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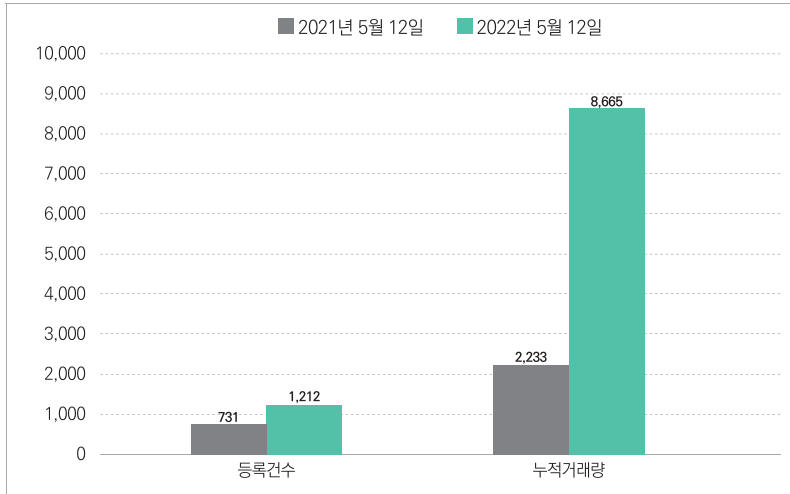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 **(중개형 플랫폼)** 중개형 플랫폼 중 플랫폼 운영자가 단순하게 데이터 상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형태의 오픈마켓형 플랫폼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스토어와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금융데이터거래소가 대표적임
  - 데이터스토어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13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이 원하는대로 데이터와 API를 거래할 수 있음
  - 금융데이터거래소에 거래 현황에 대한 실시간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비록 금융 및 인접 분야의 데이터에 한정되지만 데이터 거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2022년 5월 12일 기준 6,28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106개의 기업이 데이터 공급에 참여하고 있음
  - 2022년 5월 기준으로 총 1,212건(파일 데이터 1,159건, API 63건)의 데이터 상품이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고, 2년 간의 누적거래량은 8,655건으로 나타남



(단위: 건)



자료 : 디지털타임스(2021.5.16.) 및 금융데이터거래소 홈페이지



# Ⅲ.

## 주요국가의 데이터 활용 정책

### 1. 영국

- 영국은 데이터 개방과 오픈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사용권에 따라 데이터를 ‘개방형 데이터’와 ‘공유형 데이터’, ‘폐쇄형 데이터’ 세 가지로 분류하고, 2011년 4월에는 기업이 관리하는 개인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함
  -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데이터의 가치창출을 위해 기업혁신기술부 내 데이터 전략위원회(Data StrategyBoard, DSB)를 설립하여 오픈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데이터 활용 기회 증대를 위해 ‘오픈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하였음
  -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향상, 공공데이터 접근성 향상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영국 정부는 영국을 글로벌 데이터 시장의 선두주자로 발전시키고, 데이터 역량을 경제 성장으로 연계하기 위해 ‘빅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한 바도 있음
  - 유통과 활용의 측면에서 데이터 중심 혁신에 의해 얻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음
  - 또한 데이터 자원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미래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 혁신 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데이터

공유를 위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최근 영국 재무부는 새로운 국가 데이터 추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보고서(The Economic Value of Data: Discussion Paper)를 발표하기도 하였음

**표 4 | 영국의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 과제**

과제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소유권 및 통제에 대한 명확성 제공</li> <li>-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소유권 설정 및 통제는 기존의 법적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체계 필요</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한 개인 데이터 보호를 통한 신뢰 구축</li> <li>- 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강력한 개인 데이터 보호 체계를 구축해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켜 사회적·경제적으로 활용한 데이터 범위의 점진적 확대 필요</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부문 데이터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품질 관리</li> <li>- 정부는 공공 부문 데이터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 별 데이터 수집·관리를 통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의 품질 유지 필요</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상호 운용성 및 표준 개발</li> <li>- 다양한 주체의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회사와 소비자 모두의 데이터 사용 비용 절감을 위해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공통 표준 개발 필요</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고 안전하며 합법적인 데이터 공유 환경 구축</li> <li>- 기업이 유용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성장과 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이 데이터 공유 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li> </ul>

## 2. 일본

- 일본은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정책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2012년 7월 ‘일본 ICT 활성화 전략’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5대 중점 전략 중 하나로 ‘데이터 활성화’ 전략으로 발표되었음
  - 2014년 6월 일본 경제산업부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전략 협의회’를

발족한 바도 있음<sup>2</sup>

- 또한 관련 인프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 육성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일본재흥전략 2016’을 발표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미래의 데이터 활용전략을 구축하였음<sup>3</sup>
- 경제산업부는 ‘신산업구조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일본’을 발표하며 미래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문부과학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인재육성 종합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음

○ 일본 정부는 데이터 활용자가 공공데이터, 데이터시장과 산업데이터플랫폼 및 정보은행(민감정보)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음

- 사업 간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및 민관 통합 데이터 포털 구축 추진하였음
- 특히 「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생산 향상 특별조치법(‘18.6))」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업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음
- 일본은 2020년까지 공공·민간 통합 데이터 포털 구축을 추진 중이며, 전 세계와 연결하는 초국가적 D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16.12)하고,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17.5)하였음
- 또한 은행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산업과 유사한 ‘전자결제 등 대행업’을 도입하고 금융사로 하여금 대행업자에게 오픈API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은행, 데이터거래소 등 마이데이터 관련 산업을 준비하고 있음
- 유통과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100개 사가 함께 데이터 거래소 개설 및 법·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2017년 5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매매하는 빅데이터 거래소를 2020년까지 개설한다고 발표하였음
- 18년 1월말 5개 분야(자율주행, 바이오, 소재, 플랜트, 해운 등)의 데이터 서식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빅데이터 표준화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정부는 2020년까지 사업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및 민관 통합 데이터 포털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2 渡部俊也, 平井祐理, 阿久津匡美, & 日置巴美. (2018). DP-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8-J-028 企業において発生するデータの管理と活用に関する研究.

3 中山成夫. (2018). 日本再興戦略とその施策についての考察. 十文字学園女子大学紀要, 48(2), 205-215.

- '18년 일본은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SI 창작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였음.<sup>4</sup>
- 일본은 최근 빅데이터 등<sup>5</sup>의 보호를 위해 「不正競争防止法(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1호 내지 제16호))」을 개정하여, 데이터를 절취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소극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음<sup>6</sup>

### 3. 미국

- 미국의 데이터 활용 관련 추진 전략은 과학기술정책국과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주도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데이터 활용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2010년 12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빅데이터 관련 기술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2012년 3월 과학기술정책국에서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음

4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제47조의4, 제47조의5 등.

5 '등'을 첨가한 이유는 일본당국의 입법추진과정에서 주된 보호대상으로 염두에 두어진 것이 '빅 데이터'임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입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문구는 반드시 그것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았다는 점, 데이터의 축적 수준(집적도)을 요건화하는 경우 보호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유력한 입장(이런 입장은 田村善之, "ビッグ・データの保護～客体に着目するプロトタイプと行為に着目するプロトタイプの優劣という観点から～",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不正競争防止小委 1回 配布資料8(2017. 7. 27.), 44면)

6 「不正競争防止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11. 절취, 사기, 강박 기타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이하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라고 한다.) 또는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개시(開示)하는 행위
12.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가 개입(介入)된 것을 알고서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개시하는 행위
13. 그 취득한 후에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해서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점을 알고서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개시하는 행위
14. 한정제공데이터를 보유하는 사업자(이하 「한정제공데이터 보유자」라고 한다.)로부터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제시받은 경우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한정제공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그 한정제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위반하여 행위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개시하는 행위
15.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개시행위(앞의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호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인 것 혹은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해서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개시행위가 개입된 것을 알고서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개시하는 행위
16. 그 취득한 후에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개시행위가 있었던 것 또는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해서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개시행위가 개입된 것을 알고서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개시하는 행위

- 과학기술정책국은 ‘Data to Knowledge to Action’을 발표하며 8개의 새로운 프로젝트 과제를 제시하였음<sup>7</sup>
-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R&D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 생태계 지원을 추진하며, 2016년 5월 연방정부 네트워킹 IT R&D 프로그램 산하 빅데이터 협의체에서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을 발표하였음

**표 5 |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의 내용**

정책 방안	설명
미래 빅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기술 개발로 차세대 능력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의 크기, 전달·처리 속도, 복잡성 등 미래에 요구되는 데이터 기술에 보조를 맞춘 개발 진행</li> </ul>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의 신뢰성·타당성을 제고시켜 더 나은 결과 도출</li> <li>•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 개발</li> </ul>
빅데이터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 인프라 구축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데이터 인프라 강화 및 빅데이터에 대한 유연하고 다양한 응용과학 사이버 인프라 역량 강화</li> </ul>
데이터 공유 및 관리를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데이터 활용 가치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투명성과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메타데이터의 모범사례 개발</li> <li>•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전한 데이터 접근 제공</li> </ul>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의 윤리적 측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바른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가상공간 구축</li> <li>•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정보윤리 이해</li> </ul>
국가의 빅데이터 교육 및 훈련 환경 개선, 폭 넓은 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과학자 양성 및 전문가 커뮤니티 확장</li> <li>• 데이터 인력 확충 및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개선</li> </ul>
정부기관, 대학, 기업,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에 의한 빅데이터 혁신생태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간 빅데이터 협력 장려</li> <li>• 빠른 대응과 영향력 측정이 가능한 정책과 정책추진 프레임워크 구축</li> </ul>

<sup>7</sup> Horvitz, E., & Mitchell, T. (2020). From data to knowledge to action: A global enabler for the 21st century. arXiv preprint arXiv:2008.00045.

- 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대해서는 데이터 활용의 편익 극대화·위험을 최소화하고 유통·활용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목표 하에, 2011년 복잡한 데이터를 표준화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공시하는 ‘스마트 공시’를 추진하였음
  
- 오바마 정부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주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5월 백악관은 빅데이터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음
  - 2016년 이후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였음



# IV.

## 데이터산업법의 주요내용 및 한계점

-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에서, 세계 각 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진흥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됨

### 1. 데이터산업법의 주요내용

- **(목적)**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4조)

- **(데이터 생산 활성화)**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9조)
- **(데이터 결합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0조)
- **(데이터 자산의 보호)** 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데이터 자산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제12조)
-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13조)
- **(데이터 이동의 촉진)**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15조)
-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데이터거래사업자 및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데이터 플랫폼의 지원)** 정부가 데이터 거래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거래 관련 표준계약을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 **(데이터 거래사 양성 및 지원)**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정부가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4조)

## 2. 데이터가치평가, 품질인증 등

□ 데이터가치평가(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가치평가기관 지정 기준 및 지정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가치평가 정보 통보 의무 예외 사항을 구체화함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① 데이터거래사 등 데이터 가치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 ② 가치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 보유
- ④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유

-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함(제2항)

“지정기준 요건 ①·②·④에 관한 증명서류, 정관, 사업계획서,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지정 취소 포함) 시 그 지정사실을 신청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3항 및 제4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게 함 (제5항 및 제6항)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② 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절차 등 규정 (제14조)

-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이하,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가치 평가 신청서를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하게 함(제1항)
- 가치평가기관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고,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하며, 가치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함(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가치평가 정보 통보에 대한 예외를 정함 (제15조)

- 가치평가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가치평가 통계 및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

- ①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인하여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신청한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 ④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데이터 품질인증(시행령 제20조)

○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함

○ 데이터의 품질인증 대상은 다음으로 정함(제20조제1항)

- ① 데이터의 내용
- ② 데이터의 구조
- ③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체계
- ④ 데이터 생산·수집의 절차 및 과정
- ⑤ 그밖에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데이터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2항)

- ①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등
- ②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등
- ③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체계의 유용성, 접근성 및 적시성 등
- ④ 데이터 생산·수집의 합법성 등
- ⑤ 그밖에 데이터의 이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품질인증 신청 등(제22조)

-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게 함(제1항)
-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제2항)
- 인증기관은 품질기준 및 인증절차에 따라 품질인증을 수행하고, 품질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게 함(제3항 및 제4항)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표 1과 같이 정함(제5항 및 제6항)

### 3. 한계점 및 시사점

- 위 주요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이를 위한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음(제14조제1항)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제20조제1항), 이와 같은 공정한 가치평가, 객관적 품질인증을 바탕으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음
- 나아가 가치평가, 품질인증과 같은 제도적 기반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데, 동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제21조)
- 그러나 법령상 가치평가의 기법 및 방법, 품질인증의 절차, 기준 및 관리, 표준계약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은 아직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V.

## 데이터 활용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

### 1.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 □ 제정 필요성

- 일본의 최신 데이터 이용 가이드라인은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최근 AI와 IoT 기술의 진전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 간 융합과 가공·분석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특히 데이터 거래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계약적 쟁점들을 데이터 거래계약 유형별(①데이터 제공형 계약, ②데이터 창출형 계약, ③데이터 공유형(플랫폼형) 계약)로 사례, 상세 설명,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 산업에서 데이터 거래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 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함

#### □ 제정 방향

- 일본의 3가지 유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거래실태, 법제도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약유형을 별도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현황을 볼 때 한국의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형’이 가장 많고, 최근 민간 영역에서 데이터를 거래하는 플랫폼(오픈마켓)이 등장하고 있음
  
- 또한, 현재 10개 분야에서 빅데이터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금융, 환경, 통신, 문화, 헬스케어, 유통,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등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① 기본형 (제공형)
    - ② 창출형
    - ③ 오픈마켓형 (서비스 약관 + 공급자-수요자-서비스운영자 거래 관계 규율)
    - ④ 플랫폼형
      - 위 유형별로 계약 시 검토될 주요내용과 표준계약서, 관련 사례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실무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민간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과 방향

### □ 국내 실정

-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빅데이터 거래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나, 아직 데이터 유통 생태계 형성이 부진한 상황임
  - 미국은 개인정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해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성장 중이며, 중국은 귀양빅데이터거래소 등을 통해 공공·민간 데이터의 거래뿐만 아니라 데이터 가공, 가치평가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데이터 거래 시장 활성화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계약 실무의 사례 부족에 따른 거래 비용 증가 방지 및 데이터 계약 활성화 등을 지원을 하고 있음<sup>8</sup>

- 우리 역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거래소의 구축 등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비

- '18년에 제정된 일본의 「AI·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은 '09년 「저작권법」의 개정과 '17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빅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전히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후 일본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동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인 '19년 「저작권법」을 개정(기준 제47조의7 삭제 및 비향수적인 데이터 마이닝의 공정이용 인정)하였음

- 일본은 이와 같이 AI·데이터 이용을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데이터산업법」 제정에 적합한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계 법령상 체계도 명확하지 않음

- 일본의 예와 같이 데이터 이용 및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체계적·발전적 개정을 통해 데이터거래 활성화와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수단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방향

-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문제를 연결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

8 經濟産業省, (2018),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年, 6, 5001-1.

제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규정(예컨대 동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과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거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정보의 특성에 따른 관계 법령(예컨대 보건의료데이터에 있어서는 「약사법」 및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산업법」 간의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18년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했으나 데이터의 활용을 간과하지 않고 있음

- 즉 동법에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 거래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영국은 「익명화 실천규약」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음
- 일본은 '17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비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 가능성 저감데이터”로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의 제공이 가능함

○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해외 주요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명정보 처리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하나(동법 제28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Own Your Own Data Act」도입이 논의된 바 있는데, 동법에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인 재산권 인정함(Sec 2,(a))
- 또한 2009년 스마트 공개제도를 시작으로, 전자건강기록(EHR)의 활용에 관한 경제적 및 임상적 건전성을 위한 의료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을 통해 정보주체의 건강기록 사본 요구권을 규정한 바 있음
- 2011년에는 상호운용가능성 촉진프로그램(Medicare and Medicaid EHR Incentive Programs)을 통해 전자건강기록의 활용 과 상호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2010년부터는 블루버튼(Blue Button)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의료정보에 단일 파일의 형태로 쉽게 접근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문헌

## REFERENCES

- 김서안. (2020). 데이터 3 법 개정의 의미와 추후 과제. 융합보안논문지, 20(2), 59-68.
- 배영임, & 신혜리. (2020). 데이터 3 법, 데이터경제의 시작. 이슈 & 진단, 1-26.
- 이양복. (2020). 데이터 3 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 27(2), 423-463.
- 구태언. (2021). 데이터산업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 KISO 저널, (45), 15-18.
- 이원석, 김동희, 설수진, & 신용태. (2020). 데이터 3 법 개정에 따른 농업분야의 대응방안 연구.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7(2), 511-514.
- 이성엽. (2018).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 경제규제와 법, 11(2), 147-167.
- 송인방, & 나병민. (2020). 데이터 3 법 개정 시행에 따른 창업 환경의 변화. 법학연구, 20(4), 331-357.
- 이상용. (2018).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법조, 67(2), 5-70.
- 김수진, 이정현, & 박천웅. (2021).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상품가치 평가모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34-46.
- 김군. (2018). 중국 빅데이터 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정보법을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구 문화산업과 법), 12(2), 29-52.
- 이상우. (2022). 중국 데이터 거래 현황과 시사점-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국법연구, 49, 143-179.
- 김신곤, 이석준, & 김정곤. (2016). 빅데이터 유통 생태계에 기반한 단계별 빅데이터 유통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5), 95-106.

방정미. (2020).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법리의 재검토. *경제규제와 법*, 13(1), 96-115.

권영준. (2021).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28(1), 1-43.



이슈페이퍼 22-21-⑨

## 데이터산업법제 규제개선 동향

---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9-11-92325-54-5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매품

ISBN 979-11-92325-54-5